

붙임3.

자치회관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매식비 지원 기준

□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기준

○ 문화·여가 프로그램: 강사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

※ 프로그램 지도 강사 협약 체결시 자치사업 수강료 총 수입과 자치회관 기여도, 강사 경력 등을 종합하여 시간당 강사료 35,000원 한도에서 자율 결정 가능(단, 월 50만원 초과 지급 금지)

○ 조례 및 상위법 규정상 수강료 면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료 부족분은 실 수령 강사료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

□ 수강료 감면 기준 (조례 별표2)

감 면 자	대 상	감면지역	감면율	감면근거	비 고
국민기초생활수급자	증명서 지참자	성동구	100%	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(별표2) ※이하 구 조례로 표기	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한부모가정	증명서 지참자	성동구	100%		
국가유공자 (특수임무 수행자포함)	본 인	성동구	100%		
	본 인	타지역	50%	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	
장애인	배우자, 선순위 유족자	전지역	50%		
	본 인	성동구	100%	구 조례	
다자녀(3자녀)이상 가정	본 인	타지역	50%	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	
	만13세 이하 자녀 1명이상인 가정	성동구	100%	구 조례	
만 65세 이상 노인	본 인	성동구	50%	구 조례	

□ 자원봉사자 매식비 지원 (규칙 별표 2)

○ 지원대상: 자치회관 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 봉사자

○ 지원한도: 동별 1일 1만원 이내, 월 지원액은 구청 사전 협의

기준시간	2시간	3시간	4시간	5시간	6시간	7시간	8시간
지원금액	4,000원	5,000원	6,000원	7,000원	8,000원	9,000원	10,000원